1.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기재부 보도자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희망의 새시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배포 일시	2015. 5. 12.(화)		보도 일시	배포시
담당 부서	연말정산 종합 대책단	기획재정부	과장 김건영, 사무관 신병진(044-215-4150, 4152)	
		국세청	과장 민주원, 사무관 최진복(044-204-3241, 3252)	
			과장 최시헌, 사무관 임진정(044-204-3341, 3347)	

제목 :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보완대책 내용》

□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년) +0.3만원 → (보완) △2.1만원 → (최종) △5.1만원

< 확정 보완대책 내용 >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③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 → 15%)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 → 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12 → 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국회 추가 사항)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3만원 인상(63→66만원)

《재정산 · 환급절차》

□ (**근로소득자***)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 추가 제출 필요**

*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 포함

□ (**원천징수의무자**)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

* 5.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

○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여 **환급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여 지급**

※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

○ **환급대상자 및 금액: 638만명, 4,560억원**(1인당 평균 7.1만원)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완대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5월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적용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 서식(5.13일 공포 예정)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세무사회)

연말정산 재정산(소득세법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1. 연말정산을 재정산업무

○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비롯한 연금저축 및 장애인보장성 보험료지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상되고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이를 2014년 귀속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12일 임시국회(제333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중에는 피하고 싶었던 '근로소득 재정산' 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15.6.1.까지 수행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지급명세서는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및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부칙 제9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를 받기 전이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착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 소득세법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상(소득세법 제59조)

현 행		개 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 제 액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액>

구분	현 행		개 정	
1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5천 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으로 한다.	≥63만원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66만원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나.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제59조의2)

자녀수	현 행	개 정
3명 이상	1·2. (생 략) 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금액	1·2. (현행과 같음) 3. ----------30만원을 합한 금액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신 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공제 ※ 2명 15만원, 3명 30만원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따라서 2014.1.1 이후 기본공제 대상으로 입양한 근로자는 입양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인상(제59조의3)

현 행	개 정
연금계좌납입세액의 12%	연금계좌납입세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라.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인상

항 목	현 행		개 정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12%	장애인전용	**15%**
	기타	12%	기타	12%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	12만원	근로소득자	**13만원**
	성실신고자	12만원	성실신고자	12만원
	기타사업자	7만원	기타사업자	7만원

3. 시행시기(부칙 규정 사항)

시행일	공포일부터 시행
일반적 적용례	2014년도 귀속분 부터
자녀세액공제	2014.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압입한 분부터
특별세액공제	2014.1.1. 이후 보험료 지급 분부터

4.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할 일(부칙 제6조)

○ 이에 따라, 위 개정내용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 중, **당초 정산 시 결정세액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는 5월 말일(6월1일)까지 재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재정산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정분 내역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신용카드 수정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공인인증서 or ID))

→ 재정산 대상자 명단 및 신용카드 수정대상자 명단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처리기한 예시>

항 목		처리 기한
1. 연말정산 재 정산 시기	근로소득자	2015. 6. 01.
	공적연금 등	2015. 6. 30.
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근로소득자	2015. 6. 01.
	공적연금 등	2015. 6. 30.
3. 재정산 지급명세서제출시기	근로소득	2015. 6. 10.
	공적연금 등	2015. 7. 10.

5.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해야할 일

○ 2014.1.1~12.31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입양사실 확인서를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5057

제안연월일 : 2015. 5.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	2015.4.13.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 4.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2015.4.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조세소위 직접 회부(2015. 4.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2015.4.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조세소위 직접 회부(2015. 4. 2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32회(임시회) 제4차 회의(2015. 5. 4.)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2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5. 5. 6.)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5. 5. 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금액을 인상하여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세부담이 증가된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총급여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안 제59조).

나.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다.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함(안 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안 제59조의4).

4. 부대의견

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된데 대해 당시 업무관련 책임자에 대한 주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함.

나. 소득세법에 있어서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및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할 것.

다. 기본공제대상 중 부양가족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

(법인세 포함)을 검토하여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고, 조세소위는 이를 논의함.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천 500만원”을 “3천 300만원”으로, “66만원”을 “74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계산식 중 “63만원”을 “66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 제 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아니한 사람 또는”을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로,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를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

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table><tr><th>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th><th>공 제 액</th></tr><tr><td>50만원 이하</td><td>산출세액의 100분의 55</td></tr><tr><td>50만원 초과</td><td>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tr></tabl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2.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5천 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td><td>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
<table><tr><th>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th><th>공 제 액</th></tr><tr><td>130만원 이하</td><td>산출세액의 100분의 55</td></tr><tr><td>130만원 초과</td><td>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tr></table>② ----------
1. ---------- 3천 300만원----------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td></tr>
</table>

만원으로 한다.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3.----------66만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3. ---------- 30만원----------
<신 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 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 ---------- ----------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

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	⑨ ----------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

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⑩ · ⑪ (현행과 같음)
⑩ · ⑪ (생 략)	